

[보도자료]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문의	임푸른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010-2779-6048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act2017@gmail.com, 010-7454-2280
제목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발송일	2024년 11월 4일(월)

1. 공주책읽는여성행동,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한 50개 단체(전체 단체명 별첨 참조)는 지난 10월 29일 입법 예고한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에 신설된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2. 충청남도의회는 지난 8월에 이어 또다시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는 도서관의 도서 검열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동할 위험을 내포한 조례 개정안으로 판단하며 우려를 표합니다. 지방 정치권이 보수개신교 세력의 차별적인 입장을 그대로 받아 성평등, 성교육 도서를 유해성 도서로 지목하는 사태는 이 사회의 평등의 가치를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3. 이번 조례 개정안 이전에 이미 2023년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의 지시로 시작된 성평등, 성교육 도서 열람제한 사태는 이후 전국으로 퍼져 공공 도서관의 자유로운 운영을 침해하고 성평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충남의 도서 검열의

사태의 연장선 속에서 최근에는 경기도 학교 도서관에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폐기되었던 사건이 재조명되며 책과 도서관을 둘러싼 검열과 공공성 침해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4.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의 이유로 밝히고 있는 ‘유해성 논란’ 이전에 검열의 위험과 지적 권리의 침해를 먼저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용자의 나이와 발달 단계를 고려’한다는 이유는 자칫 시민들의 지적 권리를 자의적으로 등급화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5. 현재 경기도에서 일어난 채식주의자 폐기 사태로 도서 검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습니다. 이는 이번 조례 개정안이 충청남도만의 문제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충청남도에서 촉발된 열람제한 사태의 피해를 겪고 있는 전국의 많은 시민단체, 유관 단체 역시 충청남도의회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 시민사회 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은 이번 조례 개정안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반대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6. 이에 반대의견서를 첨부하니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문서>

-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명단 제외)

[첨부]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수신	충청남도의회
발신	공주책읽는여성행동,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및 47개 단체
제목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발송일	2024년 11월 4일(월)

1. 충청도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행정을 기원합니다.
2. 공주책읽는여성행동,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한 50개 단체(전체 단체명 하단 참조)는 지난 10월 29일 입법 예고한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에 신설된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3. 작년 충청남도 공공도서관에서 일어난 성교육·성평등 도서 열람제한 사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시작된 열람제한은 이후 전국으로 퍼져 공공 도서관의 자유로운 운영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경기도 학교 도서관에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폐기되었던 사건이 재조명되며 책과 도서관을 둘러싼 검열과 공공성 침해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충청남도의회가 검열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동할 위험을 내포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조례 개정의 이유로 밝히고 있는 ‘유해성 논란’ 이전에 검열의 위험과 지적 권리의 침해를 먼저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용자의 나이와 발달 단계를 고려’한다는 이유는 자칫 시민들의 지적 권리를 자의적으로 등급화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음을 상기해주시기 바랍니다.

5. 현재 경기도에서 일어난 채식주의자 폐기 사태로 도서 검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습니다. 이는 이번 조례 개정안이 충청남도만의 문제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작년 충청남도에서 촉발된 열람제한 사태의 피해를 겪고 있는 전국의 많은 시민단체, 유관 단체 역시 충청남도의회에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아래 의견서를 살피어 검열로 인한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 음 -

〈예고사항〉

1. 조례명 :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최근 도서관 어린이·청소년 도서 중 일부 내용의 유해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도서관 자료 선정 및 이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도서관 자료 선정 및 이용 제한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의견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균형 잡힌 장서 구성을 지향하며, 동시에 이용자의 나이와 발달 단계를 고려한 적절한 자료 제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제15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선정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의2 (자료선정 및 이용제한)

①충남도서관장은 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운영기준에 자료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자료 선정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를 선정한다.

②충남도서관장은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등 반국가적·반사회적·반윤리적인 내용의 자료가 반입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충남도서관장은 어린이·청소년 도서선정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 및 「청소년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고시된 자료를 참고하되, 어린이와 청소년의 발달 단계 및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④충남도서관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30명 이상이 서명하여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8조 제1호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을 요청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자료의 이용을 제한 할수 있다.

<반대 이유>

1. 개정안에 제15조 제3항은 **운영위원회가 선정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구체적인 구성에 대한 규정이 없음. 이에 따라 도서관 자료의 선정은 헌법이 금지된 검열 문제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선정실무위원회가 그러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될 수 있는지 전혀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2. 개정안에 제18조의 2 ① 조항의 **선정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를 선정한다**는 도서관 사서의 고유 권한(도서 선정 권한)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 선정실무위원회의 구성원에 따라서 도서의 반입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함.

3. 개정안에 제18조의 2 ②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등 반국가적·반사회적·반윤리적인 내용의 자료가 반입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이라는 규정의 모호함은 도서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개정안이 "노력하여야 한다"는 모호한 문구를 쓴 것은 지난 8월 19일 예고된 조례안이 사전 검열 위반으로 논란이 되었던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노력한다는 문구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오히려 도서관장이 자의적 판단으로 도서 반입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헌법에 금지된 도서 검열로 이어질 우려가 큼

도서 검열은 헌법 제 21조에 명시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며, 언론·출판에 대해서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 함. 검열이 허용될 경우 국민의 정신생활 및 의사 형성에 미치는 위험이 크며,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임.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개정안에 제18조의 2 ③의 **어린이·청소년 도서선정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 및 「청소년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고시된 자료를 참고하되, 어린이와 청소년의 발달 단계 및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정**의 개정안은 이미 어린이와 청소년의 발달 단계 및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어린이·청소년 도서선정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 및 「청소년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고시된 자료에 의해 청소년 유해간행물 심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참고만 한다는 것은 모순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필요함.

5. 개정안에 제18조의 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30명 이상이 서명하여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8조 제1호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청소년 유해여부 확인을 요청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자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은 특정 종교나 정치의 목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높고, 도서관법의 목적인 ‘국민의 알 권리’에 어긋남. 또한 어린이, 청소년 도서에만 별도로 기관, 단체, 주민 요청으로 심의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둘 구체적 필요가 없음. 30인이라는 기준은 지나치게 낮고 마지막 문장에 따르면 간행물윤리위원회 판단과 상관없이 운영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 도서가 제한, 폐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도서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사항>

※ 주요 국내외 선언문은 도서관에 대한 일체의 압박과 검열을 반대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도서관은 이를 준수해야 함.

- ‘도서관인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편견을 배제하고 정보 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 - 도서관인 윤리선언(한국도서관협회 2019)
- ‘장서와 서비스는 어떠한 형태의 이념적, 정치적, 종교적 검열이나 상업적 압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 IFLA-UNESCO 공공도서관선언(국제도서관협회연맹 2022)
- ‘도서와 기타 도서관 자원은 봉사대상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 정보, 계발을 위해 제공돼야 한다. 자료는 창작에 기여한 사람들의 출신, 배경, 견해 때문에 배제 되어서는 안된다. 도서관은 정보와 계발을 제공하기 위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검열에 도전해야 한다.’ - 도서관관리선언(미국도서관협회 2019)